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78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민형배·양부남·소병훈

김문수 · 정동영 · 이개호

박지원 · 안도걸 · 문정복

손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위법한 명령에 따르거나 항명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도 마

련했습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거부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1. 위법임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 2.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 3.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명령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4조의2(거부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
	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거부할
	<u>수 있다.</u>
	1. 위법임이 명백한 행위를 내
	용으로 하는 명령
	2.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3.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u>것임이 명백한 명령</u>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
	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u>한다.</u>
	③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